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정부서울청사 통합방범설비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업예산 : 금497,353,860원(부가세 포함)
(2027년: 금214,622,950원, 2028년: 금282,730,910원)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본 사업은 국가중요 보안가급 시설인 정부서울청사의 CCTV, 출입통제 설비 등 통합방범설비에 대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 유지보수 사업의 장기계속계약('24~'26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전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7. 1. 1.부터 통합방범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 대규모 국가 중요 시설의 중단 없는 운영과 연속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자가 선정되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령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5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작성자 : 방송통신주사보

이재성

(인)

확인자 : 방송통신사무관

박정규

(인)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장

